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FAO

□ 구'	매연계형	과제(해외수	요처)
------	------	-----	-----	-----

ㅇ (질문) 해외수요처가 국외정부인데 '국외기업 신용조사 보고서'를 필수로 업로드해야 하나요?

< 답 변 >

- 아니오, 해외 정부 및 국제기구는 '한국무역보험공사의 국외기업 신용조사 보고서'는 제출 면제입니다.
 - * 신청 및 문의처 : 한국무역보험공사(www.ksure.or.kr) 또는 1588-3884
- (질문) 해외수요처가 '국외기업 신용조사 보고서'를 신청했는데 발급이 늦을 것 같습 니다. 공고마감일 이후 제출해도 되나요?

< 답 변 >

- 과제 신청 시, 신용조사 보고서 **신청서를 첨부**하고, **요건검토 기간에 보완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요건검토 시 보고서 결과가 나오지 않았거나 E등급 이상이 아닌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질문) 해외수요처 과제책임자의 과학기술인번호는 어떻게 입력하나요?

< 답 변 >

- 해외수요처 과제책임자의 경우 과학기술인번호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 '00000000'의 형태로 숫자 0을 8번 입력하실 경우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 * 오류 발생 시 문의처 : SMTECH 시스템 문의처(국번없이 1357)
- (질문) 해외수요처 담당자를 꼭 외국인으로 등록해야 하나요?

< 답 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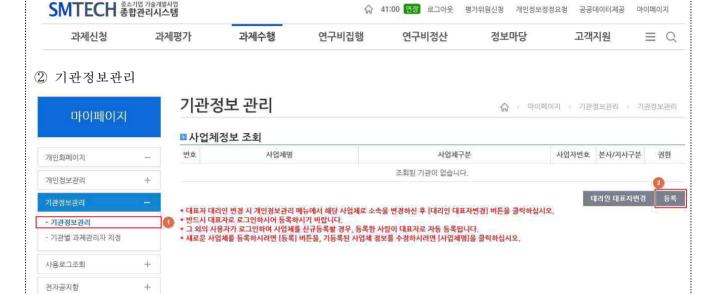
- 가급적 외국인으로 등록하여 주시되, 등록이 안 될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실무담당자를 제외한 다른 연구원으로 등록하셔도 무방합니다.
- * 오류 발생 시 문의처 : SMTECH 시스템 문의처(국번없이 1357)
- (질문) 해외수요처 납기일(Delivery date)은 언제로 해야 하나요

< 답 변 >

- 해외수요처 증빙서류의 납기일(Delivery date)은 기술개발 종료이후로 되어야 합니다.

○ (질문) 해외수요처 기관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 < 답 변 >
- 해외수요처는 외국업체나 기관이므로 smtech사이트이용에 불편함이 있어 직접 기관등록이 어려울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실무담당자를 제외한 회원가입이 되어있는 다른 연구원이 마이페이지에서 임의로 기관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 ① 마이페이지



③ 정보 입력 : **국적을 선택**하면 **사업자번호와 사업체주소의 우편번호가 자동으로 입력**되므로 이를 수정하지 않고 주소와 나머지 입력사항을 작성



○ (질문) 해외수요처 개발요청서류에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 답 변 >

- 개발요청 증빙서류의 예시 : 매매계약서(sales contract), 주문서(P/O; Purchase Order), 개발계약서(Development contract, 판매계약서(Sales note), 각서송장(Memorandum), 양해각서(MOU) 등
 - * 개발요청 증빙서류가 영문 이외의 언어로 작성된 경우 영문 또는 국문 번역문 필수 첨부
 - 개발요청 증빙서류에는 다음의 필수 항목이 포함되어야 함
 - ⓐ 개발품목명. ⓑ 개발품목의 사양. ⓒ 납기일(Delivery date) 또는 구매예정일.
 - ① 개발품목에 대한 (예상)구매수량 및 (예상)구매금액은 정부출연금(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3배 이상
 - * 외화의 원화 환산은 차수별 공고일 기준 서울외국환중개 고시 매매기준율로 환산
 - 그 외 아래 항목이 포함될 수 있음
 - ⓐ 개발 제품 인도 조건 및 방법, ⓑ 신청기업과 해외수요처 간의 과거 거래 내역.
 - ⓒ 제품 또는 기술 해당 담당자, ⓓ 제안서의 제품 또는 기술을 충분히 반영
- □ 구매연계형 과제(국내수요처)
- (질문) 국내수요처(민간) 현금 부담금의 경우, 수요처의 연구개발비로 사용 가능한가요?

< 단 변 >

- 안됩니다. 수요처의 현금 부담금은 <mark>주관연구개발기관</mark>의 연구개발비로 사용되어야 하며 수요처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질문) 국내수요처(민간)가 중소기업일 경우에도 신청 가능한가요?

< 답 변 >

- 네,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국내수요처가 중소기업일 경우, 아래의 조건을 만족해야합니다. 또한, 다수요처의 경우 모든 수요처가 조건을 만족해야 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내 용		내 용	비고		
업	업 종 제조업		중소기업확인서(접수마감일이 유효기간 내에 포함) 등 *발급: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smba.go.kr)		
업	력	창업 5년 초과	과제별 접수마감일 기준		
매 출 액 300억원 이상		300억원 이상	직전년도 확정 재무제표 기준		
신용등급 BB(bb-) 이상		BB(bb-) 이상	한국기업데이터(크레탑) 등급 기준 등		

- □ 공동투자형 과제(구, 민관공동투자과제)
- (질문) 공동투자형 과제의 투자기업 참여현황은?

< 답 변 >

< 공동투자 기술개발 투자협약기금 참여현황(63개) >

- (대기업, 15개사) 포스코, 르노삼성자동차,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현대홈쇼핑, 삼성전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롯데마트, NS쇼핑, 스템코, LG전자, 현대자동차, KT, KCC건설
- (중견기업, 25개사) 한솔테크닉스, 네이버, 인켈, 주성엔지니어링, 인성정보, 크루셜텍, 경창산업, 동양물산기업, 휴맥스, 오텍캐리어, 아진산업, 대동공업, 디아이씨, 톱텍, 국제종합기계, 세하, SFA반도체, 대상, JW홀딩스, 아모레퍼시픽, 삼지전자, 탑엔지니어링, JW바이오사이언스, 라이온켐텍, 아세아텍
- (공공, 23개사) 한국전력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인천항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보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부산항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조폐공사, 한전KDN, SRT
- (질문) 공동투자형 과제의 연구개발비 구성 방법은?

< 답 변 >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주관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합한 총 연구개발비가 있고, 투자기업 출연금이 정부지원연구개발비(정부출연금)에 대응하여 결정 됩니다.
- 따라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12억원인 과제의 경우 대략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3억원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이중 현금이 0.3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코로나19 대책에 따라 비율 변경
- 이 때, 총 연구개발비는 15억원이 되고, 추가적으로 투자기업 출연금이 (투자기업이 대기업, 공공기관인 경우) 12억원 또는 (투자기업이 중견기업인 경우) 8억원이 됩니다.

구 분		지원규모	연구개발비 비중			
		(정부)	정 부	<mark>주관연구개발기관</mark> (현금부담비율 [*])	투자기업**	투자기업
공동투자형	일반과제 최대 3년, BIG3 12억 원 이내 소부장 (연간 한도X)		80% 이내	20% 이상 (현금 2% 이상)	정부출연금 대응 투자(1:1)(현금)	대기업, 공공기관
		80% 이내	20% 이상 (현금 2% 이상)	정부출연금 대응 투자(3:2)(현금)	중견기업	

- * 현금부담비율은 총 연구개발비(정부지원연구개발비+기관부담연구개발비) 기준
- * 투자기업 출연금은 '투자기업 출연금 사용계획서'에 따라 연구개발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에 관리·운영([붙임 4] 참조)하며, 다년도 과제의 경우에는 **연차별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대응** (대·공기업 1:1, 중견 3:2)하는 투자계획 필요
- * 투자기업에 따라 정부출연금 12억+투자기업 출연금 12억 까지 신청 가능

□ 공통사항

○ (질문) 수요처의 구매동의서만 있으면 무조건 선정되나요?

< 답 변 >

- 아닙니다. 수요처와의 구매동의서는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에 신청하기 위한 요건사항 (신청자격) 중 하나일 뿐이지 구매동의서만 보고 선정여부를 결정하진 않습니다.
-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이라는 선정취지를 생각하시어 사업계획서 작성 시 '기술개발'에 관련된 내용을 충실하게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 (질문)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을 유의하면 되나요?

< 답 변 >

- 1억원 이상 연구시설 장비 구입계획을 갖고 계신 업체는 '연구장비 도입 심의서'를 함께 제출하시어 평가위원회의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아울러, 아래 사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 통신부의 도입심의를 통과하셔야 최종 구입이 가능하오니 아래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 2016년 7월 1일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되는 1억 원 이상의 모든 연구시설·장비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구.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실시하는 범부처 차원의 도입심의</u>가 시행중입니다.
 - o 도입심의는 1월, 12월 만 월 1회 개최되며 2월 ~ 11월까지는 월 2회 씩 연 22회 심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 도입심의 연간일정(http://red.zeus.go.kr/schedule/event) 확인요망
 - o 통합심의 신청 방법
 - ① RED**시설장비심의평가서비스**(http://red.zeus.go.kr) 회원가입 후 접속하여 심의일정 확인 → ② 심의일 선택(상시접수) → ③ 발표자료 등록 → ④ 사업 및 장비발표(심의)
 - 문의처: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홈페이지) http://red.zeus.go.kr
 (전화번호) 1670-0925 또는 042-865-3934
 (전자메일) red@nfec.go.kr
 - o 유의사항
 - ① 장비심의는 연구시설장비를 구축하려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직접 온라인으로 신청해야합니다.
 - ② 통합심의에서 부적합(구축 불가) 판정 받은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사업비 지원이 불가합니다.
 - · 심의를 검치지 않았거나 심의에서 부적합 판정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구시설·장비를 사업비로 구축한 경우 정산 시 전액 불인정 하여 환수처리 합니다.

○ (질문) 선정될 경우, 1차년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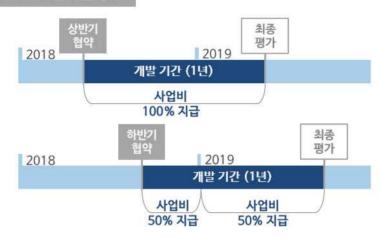
< 답 변 >

- 아닙니다. 회계연도 일치에 따른 정부출연금 지급방법이 바뀌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사항 참고 바랍니다.
- ① 개발기간이 1년 이하인 과제 경우,

- 상반기 협약 : 사업비 100%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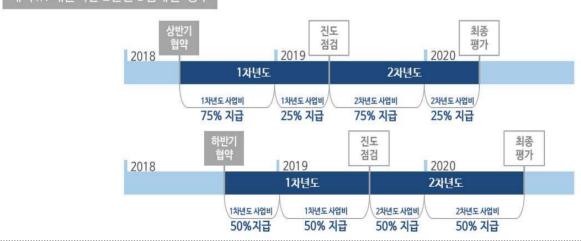
- 하반기 협약 : 사업비 50% 지급

예시 I. 개발기간 1년인 A업체일 경우



- ② 개발기간이 1년 초과 ~ 2년 이하 과제 경우,
- 상반기 협약 : 1차년도(개발 시작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사업비의 75%지급
- 하반기 협약 : 1차년도(개발 시작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사업비의 50%지급

예시 II. 개발기간 2년인 B업체일 경우



○ (질문) 과제 신청시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수요처의 현금 부담은 얼마인가요?

< 답 변 >

- 구매조건부신제품 기술개발사업에서의 민간부담 비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민간부담금의 현금 비율은 전체 사업비를 100%로 봤을 때의 비율입니다. 아래의 예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대책에 따라 비율 변경

- 아 래 -

구 분		TI의그ㅁ	연구개발비 비중			
		지원규모 (정부)	정 부	주관연구개발 기관	수요처 (투자기업)	수요처
구매연계형 (구매의무O)	구매동의서	최대 2년, 5억 원 이내 (연간 2.5억 원)	80% 이내	10% 이상 (현금 1% 이상)	10% 이상 (현금 1% 이상)	대·중견기업, 중소기업, 공공기관
			80% 이내	20% 이상 (현금 2% 이상)	-	정부, 지자체, 외국정부, 국제기구
	구매계약서	최대 2년, 5억 원 이내 (연간 2.5억 원)	80% 이내	20% 이상 (현금 2% 이상)	-	대·중견기업, 중소기업, 외국정부, 외국기업, 국제기구,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공동투자형 (구매의무X)	투자동의서	최대 3년, 12억 원 이내 (연간 4억원)	80% 이내	20% 이상 (현금 2% 이상)	정부출연금 대응 투자 (1:1)(현금)	대기업, 공공기관
			80% 이내	20% 이상 (현금 2% 이상)	정부출연금 대응 투자 (3:2)(현금)	중견기업

예) 총 사업비 6억원 규모의 수요처부담금이 있는(구매동의서가 있는) 구매연계형과제일 경우,

정부출연금 면간부담금 수요처부담금 현금 480백만원 + 현금 6백만원 이상 + 현물 54백만원 이하 + 현금 6백만원 이상 + 현물 54백만원 이하 (현금 80%이하) (총사업비의 현금 1%이상) (총사업비의 현금 1%이상)

예) 총 사업비 7억원 규모의 수요처부담금이 없는(구매계약서가 있는) 구매연계형과제일 경우,

정부출연금민간부담금수요처부담금현금 500백만원 + 현금 20백만원 이상 + 180백만원 이하 +해당없음(현금 80%이하)(총사업비의 현금 2%이상)(해당없음)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0-104호) 제4조에 따라 한시적으로 적용